

대외 학술활동수상자 특별장학금 지급 지침

개 정 2003. 11.
개 정 2014. 11.
개 정 2017. 07.

제1조(목적) 대외 학술활동(경시대회, 작품공모전등)에 참가하여 수상함으로써 본교의 명예를 높이고, 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각종 대외활동을 장려하고 학생들이 교내에서의 생활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인 감각을 터득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음.

제2조(자격)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다음 각 1~2호로 선발한다.

1. 각종경시대회에서 수상한 사항을 학과를 통하여 장학팀에 실적과 증빙을 함께 제출한 학생
2. 참여한 행사를 전국대회 규모와 지역대회 규모로 나누어 특별 장학생을 선발

제3조(시상 내역)

1. 국제. 전국 규모대회

구분	세 부 내 용	장학내역
시상 범위	대상, 금상 등 1위 이내 본 시상 개념의 수상자에게 지급	50만원
	최우수상, 은상 등 2~3위 이내 본 시상 개념의 수상자에게 지급	30만원

2. 지역규모대회

구분	세 부 내 용	장학내역
시상 범위	대상, 우수상, 특선, 금상, 은상 등 3위 이내 본 시상 개념의 수상자에게 지급	10만원

3.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 최고액

대외학술 활동기간	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 최고액 / 1인
매년 3월 ~ 8월	8월 중 지급	학생 1인이 동일한 대외학술 활동기간중 개인별 또는 팀별(단체)을 불문하고 다수 의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최대 수혜액 은 1,000,000원을 초과 할 수 없음.
매년 9월 ~ 2월	2월 중 지급	

- 팀별(단체)로 출전(공모참여)하여 수상한 경우 해당 등급의 장학금을 참여자 인원으로 균분하여 개인별로 지급함. 단 균분하기 곤란한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 할 수 있음.

제4조 (이중수혜) 본 장학금은 학업장려 목적의 특별장학금으로서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중수혜 적용)

제5조 (기타) 장학 사항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03년 11월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4년 11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7년 7월부터 개정 시행한다.